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예규

I. 목 적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에서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II. 적용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III. 채용시험

1. 채용시험 일반

가. 선발예정인원의 산정

- 1) 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인원과 시험공고(요구)일부터 1년간의 예상결원을 합산하여 산정함

<예시>

① 현재 결원 인원이 3명이고 ② 시험공고(요구)일부터 1년간의 예상결원 인원이 4명일 경우, 선발예정인원은 7명이 됨(①의 3명 + ②의 4명 = 7명)

- 2) 예상결원인원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인원·과건복귀인력 등 임용대기인원 등을 우선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3) 정년퇴직, 명예퇴직·공로연수,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되는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나. 응시연령의 계산방법

- 1)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 2) 다만, 응시상한연령을 설정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은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음

<예시>

최종시험일이 '23. 5. 26.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 최저연령(18세 이상): '23. 12. 31. 기준으로 '05. 12. 31.이전 출생자
· 최고연령(40세 이하): '82. 1. 1. 이후 출생자

다. 응시요건 등의 기준

- 1) 영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의 보유 기준일은 최종시험예정일이며, 운전면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 2) 영 제15조제3항 및 제5항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이 완성되어야 함

3) 경력경쟁채용의 근무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력요건이 완성되어야 함

4) 응시는 채용시험 원서접수일 당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채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 중 응시요건으로서의 운전면허,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하면 응시자격이 박탈됨

라. 시험범위

1) 영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소방학개론의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음

2) 영 별표 5에 따른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범위는 별표 2와 같음

마. 소방 관련학과

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유사한 학과의 범위"와 제3호의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가) 유사한 학과의 범위는 별표 3의 소방 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2분의 1 이상인 학과를 말함

나)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총 45학점 이상 교과목을 편성한 학과를 말함

다) "유사한 학과"와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판단 결정은 소방청장이 함

바. 시험위원의 위촉(영 제50조)

1)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위촉하여야 함

3) 실기시험·면접시험 등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 절차를 포함할 것

나)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4)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등 시험위원을 상호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사. 점수의 계산

1) 채용시험의 단계별 합격자 결정 및 영 제47조 동점자의 합격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함(셋째자리에서 절사)

2) 다만, 규칙 제23조의2 관련 체력시험의 종목별 측정값에 있어 악력·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하며, 배근력·제자리멀리뛰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3)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득점의 계산은 시험별 점수를 일괄적으로 계

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함(셋째자리에서 절사)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	= 최종점수 (100%) + 자격증 등 가점(5% 이내)
개인별 필기시험 종결 [(필기시험 과목수	×0.5)+(100×	개인별 체력시험 종결 체력시험 만점	×0.25)+(100×	개인별 면접시험 종결 면접시험만점	×0.25)]+(자격증 등 가점 5점 이내)

- ① 가점 - (자격증 등 가점) 최종점수에 합산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가점) 각 시험단계별 개인 총점에 합산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가점은 자격증 등 가점과 별도 합산
- ② 합격자 결정 - (시험단계별 합격자) 100점 환산점수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버림)
- (최종합격자) 일괄적으로 100점 환산점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버림)

아. 합격증명서 발급(영 제53조)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함

자. 추가합격자의 결정(영 제46조제6항 및 제7항)

- 1)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유: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 2) 위 사유 외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추가합격자 결정은 영 제51조의 사유에 한정(영 제46조제7항)
- 3)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차.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 1) 채용절차가 종료 된 후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임
- 2)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해당 전형의 응시요건(경력증명서 등), 가산점 등 합격자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일체를 말함
- 3) 채용서류의 보관은 시험 전형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되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합격한 응시자의 자료를 보관해야함. 다만, 필기 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자 전원의 자료를 보관해야함
- 4)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시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카. 채용후보자 명부에 관한 사항

- 1)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의 기준일자는 채용후보자명부 등록일의 최종일로 함
- 2)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사유는 아래와 같음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
- 나) 영 제15조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상실(채용공고의 자격요건 포함)
- 다) 영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 효력 상실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교육 시 제1

7조제2항의 졸업 기준에 재차 미달한 경우

마)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

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영 제51조)

1)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명단의 관보 게재는 응시자가 5년 간 응시자

격 정지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며, 영 제51조제2항의 단순 부정행위의

경우 관보에 게재하지 않음

2)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 영 제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한하여 징계의결 및 징계를 요구해야

함

파.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영 제51조의2, 제51조의3)

1) 채용비위 정의 및 예시

가) 채용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함

나) 예를 들면,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채용 계획(선발예

정인원,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을 수립·변경하거나 문서를 위조

하는 등의 행위가 채용비위에 해당됨

<채용비위 예시>

-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국가기관 채용담당자인 A는 B의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증원하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 C를 필기시험에 합격시킴
- (허위공문서작성 등: 형법 제227조) 면접관 A는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응시자 C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킴
- (강요: 형법 제324조) A는 응시자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채용계획을 수립 진행하도록 인사담당자 C에게 강요하여 B가 최종합격 함
-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A는 B를 합격시킨 대가로 C로부터 현물을 수수함

2) 심의위원회

가) 심의위원회 정의

-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나) 심의위원회 구성

①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합격 후 임용되지 않은 자에 대한 합격 취소를 심의하는 경우)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 취소를 심의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함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함

-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중에서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

가 지명하는 사람

- 인사·법률·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인사·법률·노동 전문가 예시>

- (인사)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인사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법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 (노동)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명·위촉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③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함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⑤ 위원이 ③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함

⑥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이 ③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외부위원"이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의 소속이 아닌 자를 의미함(당해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로 전출 및 파견된 자, 동일한 소속 장관 소속 공무원은 외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음)

다) 심의위원회 운영

① 채용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입수

※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 입수 가능

② 합격·임용 취소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판결문을 분석

하여 채용비위 관련 사실을 파악

③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합격·임용 취소 당사자에게 통지

소 당사자에게 통지

-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 소명 기한

- 소명 방법

-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 당사자가 소명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

-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시험의 공고

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의 공고는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 응시원서 교부, 합격자에 대한 특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 및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나라일터) 등에 공고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

용을 공고하여야 함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취소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함

3. 체력시험

가.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체력시험은 별표 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함

나. 체력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함

다. 도핑테스트의 실시(영 제51조제1항제6호)

1)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자의 2~5 퍼센트 범위에서 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함

2) 응시자에게 채용공고를 통해 별표 6의 도핑테스트 안내문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3) 도핑테스트 양성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응시자(이하 "면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도핑테스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함

3의2) 시험실시기관은 면책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
약물 복용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사용 면책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

다) 위원회의 위원은 임상, 스포츠의학 및 운동과학 등 해당 분야 의사
로 교육훈련담당관이 위촉함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함

마)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훈
련담당관이 소속 부서의 직원 중에서 선정함

바) 위원회에서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 복용의 인정 여부를 심의
하여 의결하는 즉시 면책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전화 또는 문
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

사)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도핑테스트는 시험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
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영 제37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5)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경
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영 제46조제6항 및 제7
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종합적성검사

가. 종합적성검사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집합검사(수기검사 또는 집합
후 전산검사)로 실시하여야 함

나.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사전 제공되어야 하며, 면접시험
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5. 신체검사

가. 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
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단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 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
사를 실시 할 수 있음

나.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합격,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하여야 함

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 7과 같음. 이 경우 시험실시권
자가 지정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마.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하며, 신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병원으로 함
바. 시험실시권자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신체검사 지정 병원을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함

6. 면접시험

가. 면접시험 개요

- 1)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 원칙이며 면접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
는 지원자의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야 함
- 2) 면접위원의 제척·기피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위원 1
명 이상을 두어야 함
- 3) 면접위원의 제척·기피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조와 면접위원을 교
체하거나 예비위원이 면접을 실시해야 함
- 4) 경력경쟁채용의 면접 시 관련분야 능력 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근
무경력·응시자격과 관련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구성하여
전문지식·기술의 평가를 시행해야 함
- 5) 면접 시행 전 면접위원에게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
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고 평가
(구조화된 면접)를 시행해야 함

나. 면접시험의 진행방법

- 1)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종합적성검사 결과 등의 자료와 사전에 설정한

면접문제의 질문과 기준에 따라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하여 검증해야
함

- 2) 면접시험은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능력과 인
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20분 이상 진행함
 - 3)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
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시행해야 함
- 다.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 8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함
라. 면접시험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정해야 함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기간의 계산

- 1)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으
로 계산

▶ 역에 의한 계산 방법(민법 제160조)

-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함
-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 ▶ 월, 연 단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복수의 간헐적 경력기간의 합산
- ① 연 단위는 경력 계산에서 역에 의한 계산이 곤란할 경우 각각의 경력을 일 단위로
환산한 다음 1년(365일)으로 나누어서 경력을 계산
- ② 월 단위의 경력 계산의 경우 연단위의 계산을 공제한 뒤 남은 일수를 1개월(30일)로 계산

-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력을 계산할 때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사항

에 따라 포함할 수 있음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근무: 3년 인정)

나)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 인정 범위의 심의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라) 심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함

마)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

바) 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학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응시자의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 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교육훈련담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사)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나. 종전의 재직기관의 해석범위(영 제15조제1항)

1) 종전의 재직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경력 등은 규칙 제6조의 전력조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징계처분의 판단시점은 징계를 받은 당시의 재직기관 성격에 따라 판단함

응시자 김OO이 A기관에 재직하던 중 2022년에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이후 A기관을 지정·고시에서 제외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의 결격사유로 판단해야 함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규칙 제28조제3항)

1)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조회 요청을 위한 서식은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세부 확인을 위해 공고문에는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반드시 요구해야 함

3) 응시자격 확인 서류의 제출 방법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름

4) 응시자격 요건 검증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함

5) 경력경쟁채용시험 제출서류 확인 요령

검증자료	사실 확인		
응시자격요건 해당 사항 및 응시자가 기재한 전체 경력	→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 조회 요청→해당 기관 명의의 확인서를 받음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관련기관에 보험 가입 이력 등을 조회 응시자로부터 근무 기간·소득금액증명을 받아 교차 확인	

<경력확인>

- 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에 확인 및 교차 검증 실시
- ② 4대 보험(고용보험 등)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내역
- ③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한 근무기관 및 기간 대조
 - ※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회사도 있으므로, 시험실시기관에서 상기 자료 외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 실시 가능

6)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라.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근무경력을 의미함. 즉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1)에도 불구하고 육아·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마.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실시[「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영 제15조 및 제39조]

1) 소방정 이하 경력경쟁채용의 성적 산정방법

서류	체력	면접	필기	실기
○	X	○ (100%)	X	X
○	X	○ (25%)	○ (75%)	X
○	○ (25%)	○ (75%)	X	X
○	X	○ (25%)	X	○ (75%)
○	○ (25%)	○ (25%)	○ (50%)	X
○	○ (25%)	○ (25%)	X	○ (50%)
○	○ (15%)	○ (25%)	○ (30%)	○ (30%)

2) 시험실시권자는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의 구분에 따른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함

3) 임용권자(시험실시권자)는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때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함(대학교와 대학원이 다른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각각 제출)

바.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영 제52조제2항)

1) 채용점검 방식

가)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점검을 하여야 함

나) 시험실시권자는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와 외부 참관인을 병행할 수 있음

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단계에서 외부 참관인을 활용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에 대해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

2)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권자 소속하에 설치

나) 위원은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 포함

※ 시험실시기관 관련자 등(당해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년 이내 타부처 전출자 및 파견자, 산하기관 근무자, 채용직위·직무관련 기관 용역·사업 수행자)은 현직위와 관계없이 내부위원으로 봄

다) 위원은 채용점검위원회가 설치되는 시험실시권자가 위촉

① 내부위원은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② 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위촉

라)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3) 채용점검 대상

가)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점검

4)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가) 시험실시기관은 면접시험 등 경채시험의 최종단계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점검 실시(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나)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은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5) 점검결과 조치 사항

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합격자를 발표

나)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시험실시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서를 소방청에 통보

6) 외부 참관인 구성 및 운영

가) 적용 대상

-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외부 참관인을 참여시켜 각 단계별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음

※ 외부 참관인 제도 적용 대상(예시)

- 요건 적/부 판단만이 아닌 적극적 서류전형 실시하는 경우
- 내부자(해당 기관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하는 경우
- 각 단계(서류/면접)별 응시자가 각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외부 참관인 구성

①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외부인 1인 이상으로 구성

- 단,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을 참관인으로 위촉 가능

② 외부 참관인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용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분야 또는 시험실시기관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

※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위원단, 시민(국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등 기관에서 이미 구성·운영 중인 외부 전문가 풀 활용 가능

③ 채용시험별로 응시자 및 시험위원과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사적 관계 등)가 없는 자를 외부 참관인으로 위촉해야 함

- 당일 기피 또는 회피사유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가능한 예비 참관인을 포함하여 복수인 섭외

④ 시험실시권자는 외부 참관인에게 수행 역할,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 진행절차, 자료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교육

하여야 함

다) 외부 참관인의 역할

① 서류전형 점검 시, 서류심사 종료 후 합격자 발표 전, 심사과정의 적법·공정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15호(예시)의 점검 리스트 작성

※ 시험실시기관은 외부 참관인에게 점검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② 면접시험 참관 시, 실제 면접시험 과정에 투입되어 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참관하고, 별지 제16호(예시)의 점검 리스트 작성

※ 외부 참관인은 응시자에게 질문할 수 없으며, 응시자의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응시자의 시야 밖에 위치해야 함

라) 채용점검위원회에의 참여 또는 점검 결과 제출

①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을 점검한 외부 참관인은 채용점검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서면 제출 등의 방식으로 별지 제15·16호(예시)의 점검리스트와 종합의견을 채용점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

- 단,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하는 경우 외부 참관인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에 대한 점검리스트와 종합의견을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권자는 외부 참관인으로부터 점검리스트 및 종합의견을 제출 받아, 2인 이상의 내부자가 별지 제14호의 ‘③위원회 상세 점검 결과’를 직접 점검하여

야 함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내부 공무원

- ③ 채용점검위원회는 외부 참관인이 제출한 점검리스트와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채용점검 시 참고해야 하며, 점검결과와 타당성 및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채용점검 결과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7) 행정 사항

가)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별지 제14호의 점검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외부 참관인 제도를 활용한 시험실시기관은 별지 제14호의 자체점검 결과서 서식에 외부 참관인 의견 활용 실적, 조치 결과(또는 계획) 등을 작성하여 소방청에 통보하여야 함

※ 외부 참관인이 '미흡'으로 판단한 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필수 작성

8. 시험공동관리위원회 구성·운영(영 제34조의2)

가. 공동위원회 구성

- 1)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채용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추가로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가) 시험과목 변경

나)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다)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공동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함
- 3) 위원장 및 위원 중 신규채용시험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함

나. 공동위원회의 운영

- 1)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함
- 2)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
- 3) 영 제34조의2 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9. 필기시험 출제문제이의제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 출제문제이의제기심의위원회 설치

소방청은 필기시험 운영 후 출제문제의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고, 출제문제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필기시험출제문제이의제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음

나. 위원회의 기능

필기시험 출제문제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답을 확정함

다. 위원회 운영

1) 1차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2차·3차 위원회는 대면심의로 운영하며, 2차·3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함

2) 1차(2차)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위원 의견 전원일치 시 정답이 확정되며 불일치 시 2차(3차) 위원회를 운영함. 다만, 3차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자문절차를 거칠 수 있음

라. 위원회 구성

- 1) 위원회의 위원은 이의제기 출제문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위촉함. 다만, 1차 위원회는 출제문제 선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함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함
- 3) 2·3차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
-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훈련담당관이 선정함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행정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과 대처법
	4) 화재 조사	- 화재 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소화약제의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2]

응급처치학개론의 범위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분야		내용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1) 응급의료체계	- 구성요소, 교육 및 질관리
	2)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역할과 책임, 전문성유지
	3) 응급구조사의 안녕	- 안전과 건강, 스트레스 관리
	4) 의료/법적 책임	- 의료/법적 책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각각 하위법령 포함)
	5) 응급의료 통신 및 기록	- 응급의료 통신, 응급의료 기록
환자이송 및 구급차 운용	1) 환자구조 및 이송	- 환자이동 및 이송, 구조, 항공이송
	2) 구급차운용	- 구급차운용, 구급차 관리
대량 재난	1) 재난관리	- 재난대비계획, 중증도 분류
	2) 특수재난	- 대량환자이송, 재난현장의 응급처치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분야		내용
전문심장소생술	1) 심정지	- 심정지환자의 처치, 소생후 치료
	2) 임박한 심정지	- 서맥환자의 처치, 빈맥환자의 처치
	3) 관상동맥증후군	-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처치
	4) 뇌졸중	-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처치
	5) 특수상황 심정지	- 특수질환과 관련된 심정지 환자의 처치
전문소아소생술	1) 신생아소생술	- 신생아소생술
	2) 소아소생술	- 소아소생술
전문외상처치술	1) 손상기전과 외상진료체계	- 외상진료체계, 손상기전
	2) 연조직손상	- 연조직손상
	3) 화상	- 열화상, 특수화상
	4) 출혈 및 쇼크	- 출혈 및 쇼크
	5) 근골격계 손상	- 근골격계 손상
	6) 체강 손상	- 흉부 손상, 복부 손상
	7) 두경부 척추 손상	- 뇌 손상, 척추 손상, 두경부 손상

	8) 환경 응급	- 환경 응급
	9) 중증 손상	- 다발성 손상, 중증 외상소생술
내과 응급	1) 호흡계 응급	- 호흡계 응급질환
	2) 심혈관계 응급	- 심혈관계 응급질환
	3) 내분비계 응급	- 내분비계 응급질환
	4) 신경계 응급	- 신경계 응급질환
	5) 소화기계 응급	- 위장관계 응급질환 - 간담도췌장 응급질환
	6) 비뇨생식기계 응급	- 비뇨생식기계 응급질환
	7) 조혈계 응급	- 조혈계 응급질환
	8) 면역 질환	- 아나필락시스
	9) 감염 질환	- 응급감염질환
	10) 중독 질환	- 중독 - 곤충이나 동물에 의한 독소의 주입
	11) 눈, 귀, 코, 목 질환	- 눈, 귀, 코, 목 응급질환
	12) 비외상성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의 퇴행성, 염증성, 감염성 질환
특수 응급	1) 소아 응급	- 소아평가, 소아응급, 소아외상
	2) 산부인과 응급	- 부인과질환, 산과응급 - 임신합병증, 응급분만
	3) 정신질환과 행동응급	- 정신질환, 행동응급
	4) 노인 응급	- 노인 응급질환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

[전문]대학교의 소방 관련 과목

구 분	과 목 명
필수과목 (1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Ⅰ), 소방관계법규(Ⅱ), 소방설비(Ⅰ), 소방설비(Ⅱ), 위험물질론, 위험물시설론, 인명구조론, 재난대응실무, 소방점검실무, 화재진압론, 응급처치론
선택과목 (19)	행정법, 소방정책론(조직·인사·예산),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지휘론, 건축법, 소방행정실무, 연소폭발론, 특수화재론, 소화설비론, 소방약제학, 피난설계론, 소방정보통신론, 제연설비론, 화재학, 화재조사론, 화재방대응론, 소방장비론

비고

1. 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2. 2 이상의 과목이 1개의 과목으로 통합편성된 경우 1과목으로 간주한다.
3. 필수과목은 8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과목당 3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위 각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소방청장이 한다.
5.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관리법으로 한다.
6.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Ⅱ)는 그 밖의 소방청 소관 법령으로 한다.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과목

구 분	과 목 명
필수과목 (1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Ⅰ), 소방관계법규(Ⅱ), 소방설비(Ⅰ), 소방설비(Ⅱ), 위험물질론, 위험물시설론, 인명구조론, 재난대응실무, 소방점검실무, 화재진압론, 응급처치론
선택과목 (19)	행정법, 소방정책론(조직·인사·예산),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지휘론, 건축법, 소방행정실무, 연소폭발론, 특수화재론, 소화설비론, 소방약제학, 피난설계론, 소방정보통신론, 제연설비론, 화재학, 화재조사론, 화생방대응론, 소방장비론

비고

1. 1학점은 수업시간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기준으로 한다.
2. 필수과목은 8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최소 2학점 이상으로 한다.
3. 위 각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 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소방청장이 한다.
4.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관리법으로 한다.
5.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Ⅱ)는 그 밖의 소방청 소관 법령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쪽 끝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상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6]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 시료가 분석되며, B 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 시료의 분석 결과는 본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통보됩니다.
- A 시료의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 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B 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 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단되나, B 시료의 분석 결과 역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 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치료목적사용 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 분석(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1. 평정요소 등

가.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평정점수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협업 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나.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면접위원 구성

가. 면접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면접위원은 채용예정계급 보다 상위계급인 소방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외부위원은 면접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

다. 면접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면접위원은 제척이나 회피를 통해 해당 응시자의 시험 절차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라. 면접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불합격 결정방법, 면접시험 진행 절차 등 면접시험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 제317조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국가고시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시험실시기관의 장 귀하

증서번호

합격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합격사항)

년 월 일

(시험실시기관의 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소방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병역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상훈·논문·수상실적·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여부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소방공무원 채용 및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채용·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력·경력·4대보험·자격증·외국어성적·학위취득·장애인 여부 등) 확인기관	채용 관리(자격확인)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소방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채점표 (남자)

응시번호																	사 진	
성명																		
생년월일					측정일자													
약력 (kg)	측정 기록	(1차) 우: 좌:								(2차) 우: 좌:								기 록 관 (서명)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45.2 이하	45.3 ~ 48.0	48.1 50.0	50.1 51.5	51.6 ~ 52.8	52.9 ~ 54.1	54.2 55.4	55.5 ~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득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배근력 (kg)	측정 기록	(1차)								(2차)								기 록 관 (서명)
		※ 소수점 절사																
	기준	146 이하	147 ~ 153	154 158	159 165	166 ~ 169	170 173	174 ~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득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측정 기록	(1차)								(2차)								기 록 관 (서명)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16.0 이하	16.1 ~ 17.3	17.4 18.3	18.4 19.8	19.9 ~ 20.6	20.7 ~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득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제자리 멀리뛰기 (cm)	측정 기록	(1차)								(2차)								기 록 관 (서명)
		※ 소수점 절사																
	기준	222 이하	223 231	232 236	237 239	240 ~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득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윗몸 일으키기 (회/분)	측정 기록																	기 록 관 (서명)
	기준	42 이하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득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왕복 오래달리기 (회)	측정 기록																	기 록 관 (서명)
	기준	56 이하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득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비고)																	응시자 확인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채점표 (여자)

응시번호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측정일자								
약 력 (kg)	측정 기록	(1차) 우: 좌: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2차) 우: 좌:					기 록 관 (서명)		
	기준	27.5 이하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득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배근력 (kg)	측정 기록	(1차) ※ 소수점 절사					(2차)					기 록 관 (서명)		
	기준	84 이하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득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cm)	측정 기록	(1차)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2차)					기 록 관 (서명)		
	기준	19.4 이하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득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제자리 멀리뛰기 (cm)	측정 기록	(1차) ※ 소수점 절사					(2차)					기 록 관 (서명)		
	기준	159 이하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득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윗몸 일으키기 (회/분)	측정 기록													기 록 관 (서명)
	기준	32 이하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득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왕복 오래달리기 (회)	측정 기록													기 록 관 (서명)
	기준	27 이하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득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비고)										응시자 확인				
										성 명:				

도핑테스트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20____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6호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시·도지사 귀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1. 응시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 여 []
생년월일		응시번호	
핸드폰		이메일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_____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담당의사 서약

성명		전공분야	
주소			
전화(팩스)		전자우편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치료 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하고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비 고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 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TBPE 검사 포함)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백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응시
번호

본인
필적

(예시)000(본인성명) 확인함

기재

000 확인함

식별
코드

성명

【사 진】

면접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⑥

⑥

⑦

⑦

⑧

⑧

⑨

⑨

위원번호

①

②

③

④

⑤

면접일자

20 . . .

위원서명

성명 (서명)

평정요소

가. 문제해결 능력

나. 의사소통 능력

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라. 협업 능력

마. 침착성 및 책임감

위원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⑩

⑧

⑥

④

②

⑩

⑧

⑥

④

②

⑩

⑧

⑥

④

②

⑩

⑧

⑥

④

②

⑩

⑧

⑥

④

②

비고

- 50 -

297mm×210mm[백상지(15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지 10]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기관

회사명

대표자 성명

현황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예시)

근무
형태

2010.12.25. ~ 2012.12.22.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1

성명

연락처

서명

확인자 2

년

월

일

사 (직인)

○○○시·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1 -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철하여 제출

성 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 · 도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홍길동	12345678	구급	서울	소방사	일반경력

연번	제출 서류	제출 여부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참고자료4)	
2	주민등록 초본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자격증 사본	
6	박사/석사/(전문)학사학위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수여예정증명서	
7	연구실적	
8	특허실적	
9	학위논문	
10	근로계약서	
11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2	기타 실적 관련 서류	

※ 해당 증빙서류 앞부분에 함께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종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무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연도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주)○○병원	2017	주임	95.05.01.~97.12.01. (2년 8월)	응급구조사

입증인(1) 주소 :
성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소 :
성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임 : 폐업사실증명서 1부.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교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공고문(202 .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2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
는 ○○공고문(202 .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2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소방청 경력경쟁채용등 자체점검 결과

① 채용 결과

① 최종 선발결과 * 고졸자를 채용한 경우(인원에 고졸자 표시)

부서	직위	직급	인원(고졸자)	사전계획과 달라진 사항

※ 공고번호 : ○○○ 공고-000호('00.0.0)

② 단계별 시험 결과 개요

단 계	주요 내용				사전계획과 달라진 사항
공 고	일 자	2023. 1. 25	방 식	119고시, 홈페이지	-
원서접수	기 간	2023. 2. 21~27	결 과	총 ○명 접수	
서류전형	일 자	2023. 3. 31	위 원	총 ○명(내부 ○명, 외부 ○명)	
	방 식	서면 심사	결 과	총 ○명 중 ○명 합격	
:					

③ 채용시험 진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

※ 부처 채용담당자가 작성

② 채용시험 점검 결과

① (운영시) 채용점검위원회 구성·운영 결과

자체점검 일자		
위원 구성 (총 ○명)	내부(○명)	○○○○국장(위원장), ○○○○과장
	외부(○명)	○○○(○○대학교 교수)
주요 지적사항 및 점검결과 요약		· ·

※ 공무원 위원은 소속 직위 및 직급 모두 기재

② (운영 시) 외부 참관인 제도 운영 결과

전형	의견	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계획)
서류	▪	▪
면접	▪	▪
기타	▪	▪

③ 위원회 상세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근거 자료 (점검위원이 작성)
① 채용계획 수립		
○ 시험 실시 계획 수립 시기 및 계획의 적정성 - 시험 시행 전에 계획수립 및 보고 되었는가? - 서류·면접 전형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② 공고		
○ 공고내용은 적절했으며, 공고기간은 준수했는가? - 면접시험 평정기준 등		
③ 응시요건		
○ 채용예정 직위·목적에 부합하게 응시자격 기준을 설정하였는가? - 응시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여부 등		
④ 시험위원(서류전형, 면접시험)		
○ 채용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위촉했는가?		
○ 외부위원 1/2 이상 위촉 기준을 준수했는가?		
○ 응시자와 제척·기피 사유 있는 시험위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각 단계별 시험취지에 적합하게 위원을 위촉하였는가?		
⑤ 서류전형		
○ 사전에 설정된 심사기준(항목·비율)을 준수하였는가?		
○ 어느 한 시험위원이 지나치게 관대/엄격하지는 않았는가?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근거 자료 (점검위원이 작성)
⑥ 면접시험		
○ 구조화된 면접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했는가?		
○ 면접과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험위원 주관에 의한 질문을 배제했는가?		
○ 어느 한 시험위원이 지나치게 관대/엄격하지는 않았는가?		
⑦ 실기 또는 필기시험 실시한 경우		
○ 실기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등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는가?		
○ 필기시험 출제 및 집행 등에 있어서 보안대책은 적절하였는가?		
○ 채점이 기준에 의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⑧ 합격자 결정		
○ 단계별 시험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공정하게 결정되었는가?		
○ 시험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작성방법 : 점검결과에 '적절', '부적절'로 기재하고 점검시 확인한 서류를 기재, 당초 설정한 기준과 절차를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제출

④ 점검결과 종합의견

점검일 : '00.00.00.

점검위원 : 서명

외부 참관인 체크리스트(서류전형)

구분	점검 목록(예시)	확인란		
		양호	미흡	비고
서류 전형	■ 계획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	☒	의견 작성
	- 당초 결정한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준수하였는지? (원서접수 이후 합격인원을 임의로 변경하지는 않았는지?)	☒	☒	
	■ 시험위원 위촉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를 위촉하였는지?	☒	☒	
	-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 위촉 여부	☒	☒	
	- 응시자와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자 배제 여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여부 확인)	☒	☒	
	■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시험위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응시자 개인의 인적사항을 배제하였는지?	☒	☒	
	- 전형기준을 정성평가로만 구성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과다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	☒	
	- 적극적 심사 중 특정인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관대/엄격하지는 않았는지? (위원 간 큰 편차로 정성평가 항목이 평정되지는 않았는지?)	☒	☒	(적극적 심사시에만 작성)
기타	공정채용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권고 사항 기재			

작성일 : '00.00.00.

작성자 : (서명)

외부 참관인 체크리스트(면접시험)

구분	점검 목록(예시)	확인란		
		양호	미흡	비고
면접 시험	■ 구조화 면접에 적합하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 면접 문제(자료)가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출제되었는지?	☒	☒	의견 작성
	- 평가해야 할 역량과 기준에 따라 면접 질문(후속 질문 포함)이 출제되었는지?	☒	☒	
	■ 시험위원 위촉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를 위촉하였는지?	☒	☒	
	-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 위촉 여부	☒	☒	
	- 응시자와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자 배제 여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여부 확인)	☒	☒	
	■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모든 지원자에게 통일된 면접 방식과 질문을 활용하였는지? (단발성 또는 돌발 질문에 의한 평가는 아니었는지?)	☒	☒	
	-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직무역량 외의 편견요소를 유발하는 질문은 없었는지?)	☒	☒	
	- 직무관련성이 높거나 면접 평가 요소와 관련된 정보만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였는지? (직무역량 외의 편견요소를 유발하는 자료 제공은 없었는지?)	☒	☒	
기타	공정채용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권고 사항 기재			

작성일 : '00.00.00.

작성자 : (서명)

〈 예규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92